

資本主義 經濟體制와 分配問題

安錫教*

.....<目次>.....

- I. 序論
- II. 經濟體制와 分配問題
- III. 自由放任資本主義와 分配問題
- IV. 韓國的 資本主義下에서의 分配問題

I. 序論

근년에 들어서면서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政治를 포함한 社會의 諸領域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民主化’에 대한 욕구의 일환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民主的 社會란 社會構成員 및 다양한 利益集團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조직결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일 것이며, 따라서 각 계층이 권위주의적 지배하에서 유보되었던 ‘基本權’을 되찾고자 하는 성향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경제 발전과정을 조감해 보면 그러한 社會的 公正性에 대한 욕구는 자본주의 발전의 특정한 時空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과제는 기실 인간이 社會的 共同體를 형성한 이후 부단히 제기되어 온 본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근대 경제학에서 말하고 있는 資源分配의 機能的 效率性과 分配의 衡平性을 조화시키는 과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나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여 ‘*justitia commutativa*’, ‘*justitia distributiva*’의 형태로 정립된 바 있었다. 경제학을 학문체계로 정립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이른바 ‘界限革命’ 이전의 시기까지만 해도 分配正義의 실현 내지는 分配邏輯을 규명하는 작업은 經濟學의 ‘본질적 과제(fundamental issue)’로 간주되고 있었다.⁽¹⁾ 오랜 인류역사를 통해 볼 때 경제가 지속적인 단순재생산의 과정을 밟아오던 시기에, 다시 말하면 ‘나누어 먹을 파이’가 작은 시기에 성장의 문제보다 오히려 분배문제가

* 漢陽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1) D. Ricardo, *The Principle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London: Dent, 1972, p. 272.

부각되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아이러니칼한 현상이다.

그러한 분배의 문제를 기술적 생산함수와 시장의 경쟁메카니즘의 일환으로 간주하게 된 것은 경제학의 ‘科學性’ 내지는 ‘實證’ 經濟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부터였다. 이에 따라 分配의 公正性이라는 規範的 성격의 질문은 배제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산업혁명 이전의 傳統社會에 있어서 경제행위는 종교적 가치관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사회생활의 여타 영역과의 강한 연계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經濟부문을 사회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근대적 현상으로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만데빌 이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²⁾ 이러한 轉化 현상은 資本主義의 生產力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니와, 에드가 셜린에 의하면 자본주의에로의 발전이란 여타 사회부문으로부터 경제영역이 독자화되어 가는 과정(Automatisierung der Wirtschaft)으로 파악하고 있다.⁽³⁾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利潤추구를 포함하여 물질적 영역에서 좀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과거의 종교·문화적 규범의 구속이 제거되고 이것이 경제성장의 기본동인으로合理化되어 갔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17세기의 경험적 합리주의의 팽배와 力學의 발달을 기본으로 하는 자연과학적 합리성과 기계론적 접근방법이 근대경제학에 도입되면서 ‘事實’과 ‘價值’의 영역이 분리되어 갔으며 분배 ‘正義’의 실현이라는 규범영역에 관한 논의 역시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었다.

특히 兩大戰爭을 치르면서 경제학자들은 經濟成長에 일차적인 관심을 보여왔거나(50~60년대), 분배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도 그것을 독자적인 政策目標로서라기보다는 성장이나 안정 및 고용과 같은 여타 정책목표달성을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主流經濟學에 있어서 분배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분배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사회적 갈등을 제어하는 과제는 부단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되어 온 것이었다. 우리는 이미 ‘만체스터 資本主義’가 反證하는 바와 같이 調和와 均衡을 토대로 하는 古典的 自由主義經濟學에 내재하는 현실인식상의 제약성을 간파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分析의 시각을 단순한 物理的 投入單位로서의 生產要素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要素의 所有者로서의 생동하는 개체나 집단의 경제적 행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이들간에는 필연적으로 ‘조화와 갈등’의 관계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여기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하면서 資本主義라는 經濟體制와 分配 간에

(2) L. Dumont, *From Mandeville to Marx: The Genesis and Triumph of Economic Ide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3) E. Salin, *Politische Ökonomie*, Tübingen: J.C.B. Mohr Paul Siebeck, 1967, p. 2.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조감해 보고, 韓國資本主義의 발전에 있어서 分配問題가 등장하게 된 社會・經濟的 배경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II. 經濟體制와 分配問題

상이한 經濟體制간에 分配의 衡平度를 비교하기는 몹시 어려운 일이다. 巨視的 分配의 대상이 되는 國民所得의 추계에 있어서 서서비스부문 내지는 非物質的 生產部門을 처리하는 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體制하에서 생산된 재화의 市場價值를 산정하고 ‘적정換率’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人的所得分配를 비교하는 경우 國家의 所得再分配機能, 예컨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조세규칙의 효과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건강, 교육, 의료, 주택 등과 같은 社會的消費基金의 再分配效果를 분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대체로 그간에 이루어진 여러 분석자료들에 의하면 소득의 분배 자체는 社會主義 國家의 경우 상대적으로 平準化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음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동독에서의 지니係數 값은 0.192로 서독 및 여타 서구의 국가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分配의 衡平度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社會主義 國家에서 형평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특히 다음과 같은 要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計劃經濟의 성격상 國가의 分配기능이 강화되어 있어 社會的基金을 통한 정책투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둘째, 資本主義 國家들과 비교하여 주부를 포함한 가계구성원의 勞動參與率이 높기 때문에 家計所得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마지막으로는 家計所得에서 資產所得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자산의 집중이 유발하는 소득의 편중현상이 약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본질적인 과제는 여하히 生產力を 발전

〈表 1〉 國家別 人的所得分配：지니係數

國家(年度)	지니係數		國家(年度)	지니係數	
	粗所得基準	純所得基準		粗所得基準	純所得基準
스웨덴(1970)	0.356	0.258	서 독(1969)	0.331	0.313
미 국(1971)	0.343	—	동 독(1970)	0.192	—
영 국(1967)	0.332	0.298			

資料 : P.v.d. Lippe, "Einkommenspolitische Vergleich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er DDR und der Volksrepublik Polen", in D. Cassel and J. Thieme (ed.), *Einkommensverteilung in Systemvergleich*, Stuttgart: Gustav Fischer Verlag, 1976.

시켜 ‘파이’ 자체를 크게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이 어려운 경우 ‘빈곤의 평준화’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마르크스의 이론에 있어서는 生產關係의 社會主義的 轉換이 이루어지면 계급모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배상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르크스는 나아가서 자본주의적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동시에 첨예화되는 체제모순에 의하여 사회주의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사회주의적 과도기를 거치고 난 이후의 共產主義社會에서는 ‘욕구에 의한 분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封建主義的 殘滓가 강하고, 생산력의 발전정도가 낮은 상황하에서 체제가 전환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의 우선적 관심사는 生產手段의 國有化와 함께 社會主義的 生產力を 여하히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다른바 外延的 成長의 시기에 이들 국가에서의 工業化率이나 經濟成長率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것이 사실이었다. 문제는 이들 국가들이 内包的 成長으로 개발전략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는 발전단계에 진입하면서부터 生產力發展에 대한 社會主義體制의 逆機能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이미 레닌의 新經濟政策(NEP: New Economic Policy) 이후 一客觀的 條件이 요구한다면 迂迴(改革)를 통한 生產力 발전을 시도하여야 한다는 그의 哲學에 입각하여—60년대말의 동구라파 및 1978년 이후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經濟改革은 ‘效率的 資源配分’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주의체제의 변용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사회주의국가들은 거의 예외없이 과거의 ‘平等主義的’ 分配方式에서 탈피하여 市場經濟에서와 같은 能力위주—勞動의 量과 質에 따른—의 原則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생산과정에서 노동자의 능력발휘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物質的 자극이 필요하다는 보편적인 명제를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를 보면 經濟改革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工業化가 꼭 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一예：유고슬라비아—, 능력에 따른 분배의 원칙을 포함하여 부분적으로 시장경제적 요인들을 도입한 결과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계층별 소득의 격차가 심해진다는 一예：헝가리—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도 결국 ‘效率과 衡平’을 조화시키기는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資本主義體制하에서의 분배문제는 어떠한가? 기실 產業革命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分配公正性을 실현하는 과제는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큰 ‘집’이 되어 왔다. 이러한 견해는 착취—피착취관계를 자본주의체제에 내재하는 가장 큰 복리현상으로 간주했던 마르크스에서부터 자유주의경제학자 미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체제의 윤리적 토대에 회의를 품고 있던 바라노프스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資本主義 經濟制度는 결코 經濟的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倫理的 理由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⁴⁾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近代自由主義 經濟學者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의 하나인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資本主義體制와 分配’에 관한 견해를 요약정리해 보고, 이러한 自由主義的 分配理論에 관한 필자의 소견을 개진하기로 한다. 미제스는 “資本主義에 대한 가장 신랄한 중상모략은 體制가 갖는 不公正性을 겨냥하고 있다”⁽⁵⁾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일부의 진보적 또는 자유주의적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즉 사회구성원은 生產物의 分配에 참여하여 기초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自然法的 權利를 갖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한다. 資本主義體制와 分配에 관한 미제스의 논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개의命題로 요약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命題 1] 資本主義體制하에의 所得分配는 要素의 限界生產性에 의하여 결정된다. 미제스에 의하면 分業에 의하여 창출된 재화의 분배에 관한 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른바 神的인 또는 自然的인 公正의 原理를 주장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⁶⁾

[命題 2] (근로)소득의 상승은 오로지 자본축적율이 노동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⁷⁾ 그 결과 勞動의 限界生產性 및 실질임금이 상승한다. “마르크스건 케인즈건 또는 덜 알려진 학자들 중 어느 누구도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인구증가율에 비하여 가용한 자본증가율이 빨라야 한다는 주장의 약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⁸⁾ 물론 이 때 자본축적의 원천은 저축이며 저축된 자본을 투자하여 경제성장으로 연결하는 고리집단은 미제스에 의하면 企業家들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통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오늘날과 같이 상승된 것은 불투명한 공정성의 개념에 관한 허황된 논의의 결과가 아니며, 이른바 ‘파렴치한 개인주의자’ 내지는 ‘착취자’들의 활동에 기인하는 것이다.”⁽⁹⁾

[命題 3] 자본축적 및 생산적 투자활동을 통하여 國富창출의 원천이 되도록 하는 경제제

(4) Michael von Tugan-Baranovsky, *Studien zur Theorie und Geschichte der Handelskrisen in England*, Scientia Verlag Aulen, 1969, p.31.

(5) Ludwig von Mises, *Die Wurzeln des Antikapitalismus (The Anti-Capitalistic Mentality)*, Frankfurt aus Main: Fritz Knapp Verlag, 1958, p. 92.

(6) 미제스는 分配와 관련하여 ‘보호한 生產性’의 개념대신 限界의 개념을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오늘날 이발소의 면도사나 영국수장의 요리사는 200년전의 능률과 다를 바 없으나, 그런데도 이들의 賃金이 상승하는 것은 공업화과정에서 노동수요의 증가에 따른 ‘限界機會費用’이 현저하게 상승한 테 있다고 보고 있다.

上揭書, p. 100, p. 98.

(7) 上揭書, pp. 95-6.

(8) 上揭書, p. 101.

(9) 上揭書, p. 95.

도는 오로지 ‘自由放任主義的 資本主義’ (*laissez faire Kapitalismus*)이다.⁽¹⁰⁾ 미제스에 의하면 오늘날의 개발도상국가들이 서방세계와 같은 공업화를 달성하여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그러한 자유방임주의적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길 밖에 없다.

資本主義는 비단 그러한 生產力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로서의 ‘自由의 實現’에 기여한다. 미제스에 의하면 倫理的으로 바람직스러운 사회의 존재 이유는 自由의 보장에 있으며, 自由는 自由放任의 哲學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資本主義 시기에는 노예와 예종의 모든 혼적이 사라졌다. ……자본주의는 모든 종류의 特權을 제거하고 모든 인간이 法 앞에 平等한 상황을 실현하였다.”⁽¹¹⁾

이상에서 요약한 資本主義와 分配에 관한 미제스의 思想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대체로 여타 自由主義者들의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는 그러한 命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조감해 보기로 한다.

III. 自由放任資本主義와 分配問題

1. 分配에 관한 限界生產性 理論

市場經濟를 신봉하는 自由主義 經濟學者들에 따르면 原子的 競爭秩序를 토대로 하는 市場經濟體制下에서는 公正과 效率이 자동적으로 조화된다는 것이었다. 이미 1705년 만데빌의 별의 寓話에서 利己主義의 行爲가 社會的 厚生에 기여한다는 온유적 주장이 개진되고 난 뒤, 1899년 클라크에 의하여公正한 所得分配란 限界生產性 이론에 의하여 규명된다는 이론이 정립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市場經濟란 社會的 厚生의 極大化뿐만 아니라 分配의公正성을 실현하는 데에도 合目的이라는 주장이 확산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계생산성 이론은 생산요소에 대한 需要의 法則, 즉 기업은 要素를 투입하는 데 있어서 한계생산성과 요소가격이 같도록 하여야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내용으로 이 이론이 동시에 分配理論으로 정립된 것이었다. 이 理論에 따르면 完全競爭下에서 개별 生產要素의 機能的 所得은 생산과정에서 나타난 요소의 한계생산성 내지는 市場의 상대적 최소성을 반영하도록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資源分配이나 所得의 分配는 完全競爭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단히 복합적인 社會的・制度的 要因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다

(10) 上揭書, p. 94.

(11) 上揭書, p. 103.

만 한계 생산성이론을 포함한 主流經濟學에서는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사회제도적 측면은 與件(data)으로 처리되어 分析의 의과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이러한 모델편의주의적 접근방식(model platonism)은 한편으로 經濟學의 학문적 과학성을 제고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경험과학으로서의 경제학적 認識能力의 회생을 요구한 것 이었다. ⁽¹²⁾

빔-바베르크는 그의 널리 알려진 論文 「힘인가 經濟法則인가(Macht oder Ökonomisches Gesetz)」에서 소득분배에 대한 ‘힘’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적 제도나 규준이 재화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하는 사람은 백치밖에는 없다.” ⁽¹³⁾ 그는 이어서 경제적 힘과 같은 사회적 법주가 순수한 경제적 요인과 함께 分配法則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그는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制度的 要因이나 경제적 힘은 不完全競爭模型에 의한 微視理論으로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론적 측면이 아니라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집단들의 역할과 상대적 힘의 행사가 갖는 중요성이다. 독일 秩序自由主義學派(Ordo-Liberalismus)의 대표자로 2次大戰後부터 시행된 社會的 市場經濟制度에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오이켄 역시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人類歷史는 힘에 의한 지배를 이념적으로 정당화시켜 그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점철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學問이 이해관계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하였다는 점을 살펴하고 있다. ⁽¹⁴⁾

“역사서술과 경제학은 힘에 의한 투쟁(Machtkämpfe)과 그 확산 및 냉혹성이 갖는 의미를 망각하는 위험에 직면해 왔었다.” ⁽¹⁵⁾ 따라서 “과거와 현재에 그려하듯이 아마 장래에도 경제적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힘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¹⁶⁾ 그렇다면 經濟的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으나, 그 하나는 ‘組織’이며 그 다른 하나는 ‘所有’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機能的 所得分配에 있어서 결정적인 勞使간의 관계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힘은 使用者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

限界生產性理論이 갖고 있는 두번째 문제는 그것이 市場을 통한 機能的 所得分配에 국한

(12) H. Albert, “Theorien in den Sozialwissenschaften”, in Hans Albert (ed.), *Theorie und Realität*, J.C.B., Mohr Tübingen, 1972, p. 10.

(13) Eugen von Böhm-Bawerk, “Macht oder Ökonomisches Gesetz?”, in Fritz Baade (ed.), *Weltwirtschaftliches Archiv*, Bd. 78, Hoffmann und Campe Verlag, 1957, p. 230.

(14) W. Eucken, *Die Grundlagen der Nationalökonomie*, Achte Auflage, Berlin·Heidelberg·New York: Springer Verlag, 1965, pp. 12~3.

(15) 上揭書, p. 197.

(16) 上揭書, pp. 196~7.

되어 있어 人的所得에 영향을 미치는 國家의 所得再分配 등과 같은 영역이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分配’의 개념을 확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市場唯卡니즘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일련의 분배문제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財產, 특히 生產的 資產(productive assets)의 分配問題
- 2) 稅세율 및 조세구조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 문제
- 3) 사회적 보장, 교육 및 의료 등과 같은 복지의 분배영역
- 4) 公共財의 규모와 구조(계층간·지역간)의 형성문제

여기에서는 재산의 분배 및 生產的 資產에 관한 측면만을 간단히 거론하기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經濟體制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私有財產의 허용여부 내지는 生產關係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를 포함한 社會主義者들의 資本主義에 대한 최대의 비판은 生產手段의 私的 所有와 여기에서 유발되는 계급모순 내지는 착취-피착취 관계 및 노동의 소외문제였다. 資本主義體制의 기본적 구성요인이 되는 私有財產의 허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사상적 배경을 갖고 있다. 첫째, 모든 人間은 자신의 노력과 근검에 대한 결실을 소유할 권리갖는다는 것이며, 둘째, 경제적 노력의 결과가 해당개체에게 귀속되는 경우 능력발휘를 위한 동기가 유발되어 經濟的 效率性을 提高시킬 것이라는 논리이다.⁽¹⁷⁾

그러나 우리는 資本主義 發展過程에서 私有財產의 무제한 허용이 유발하는 社會的 問題들이 어떠한가를 잘 알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所有’란 ‘힘’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경제적 힘의 不公正配分은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나아가서 生產的 資產의 집중 역시 소수의 소유계층과 소유로부터 ‘自由로운’ 계층간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產業民主主義를 저해할 소지를 안고 있고, 마지막으로 財產은 그 자체가 소득의 중요한 원천이 되기 때문에 소유의 편중현상은 곧바로所得分配의 不公正性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재산의 집중은 비단 人的所得分配 뿐만 아니라 機能的所得分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토하이머나 프라이저(Erich Preiser)와 같은 독일의 경제학자들은 노동자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賃金上昇에 대한 勞動供給의 彈力度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들의 協商力이 강화된다는 점을 지적

(17) 이러한 사상은 밀(J. St. Mill) 이후 私有財產에 대한 自由主義思想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밀은 土地의 경우에는 私的 所有를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土地의 生產力은 自然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증가된 生產力의 상승분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自然的許與’를 私有化 하는 것은 ‘不平等의 극치’로 보고 있다.

하고 있다.⁽¹⁸⁾

그동안 독일을 대상으로 행해진 몇 가지의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家計의 1.7%가 生產的 資產의 7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모든 유가증권의 66%가 年純所得 1만마르크를 갖고 있는 모든 가계의 3.8%에 집중되어 있다. 중장기적인 경향에 있어서도 '利潤'所得보다 '資產'所得의 증가율이 빠른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소득의 分配政策에 있어서 자산소득이 갖는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가치분소득에서 자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1970)로 나타나 있다. 이상과 같은 資產所得의 집중현상은 대체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보편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자산의 분배정책 내지는 생산적 자산에 대한 근로계층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경제적 힘의 집중과 人的所得의 不公正配分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經濟成長과 分配에 있어서 資本의 역할에 관하여

경제성장이 '근검절약'을 통한 자본의 형성내지는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의 결과이며, 저축을 投資資本化시키는 매개집단으로서 이른바 '착취계급'으로 비난받는 동태적 기업인의 역할이 중요하고, 장기적인 노동소득의 상승은 勞動增加率을 상회하는 資本蓄積率, 즉 근로자 일인당 장치비율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勞動生產性의 상승에 기인한다는 미제스의 주장은 일견 자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資本蓄積 第1主義的(capital fundamentalism)' 사고방식은 그 후 특히 후기 케인즈학파의 經濟成長模型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이 모형은 과거 UN이 설정한 제1차, 2차開發年代에 걸쳐 제3세계의 經濟成長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원조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이른바 先成長後分配의 논리로 정형화되어 중요한 인식론적 배경으로 작용하여 온 것이었다.

그러나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그러한 저축 갭(saving gap)의 해결만으로 성장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 있다. 개발문제에 관심이 있던 경제학자나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발전의 악순환'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資本' 이외의 社會・制度的 要因들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훨씬 후의 일이었다. 특히 과거 서구자본주의의 발전 상황과는 달리 오늘날의 新生資本主義 國家의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國際分業構造나 植民의 歷史가 넘겨 놓은 구조적・제도적 고행성 등과 같은 요인들이 성장 내지는 발전의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南美諸國이나 필리핀 등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植民母國이 이식해 놓은 'Latifundien-Minifundien'의 관계나 소수의 경제적 지배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社會制度는 단순한 저축갭의 기술적 해결만으로 자생적 경제성장

(18) E. Preiser, *Wachsturm und Einkommensverteilung*, Heidelberg, 1970, p.46.

이 어렵다는 사실을 反證해 주고 있다. 또한 킨들버거教授의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국가간에 소득수준과 저축성향, 저축과 경제성장간에 별다른 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¹⁹⁾

어느 국가의 공업화내지는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슘페더적 기업인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들 기업인들의 창조적 ‘要素配合’을 통한 혁신기능이 중요하다는 점 역시 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제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勞動’이 단순한 생산요소의 하나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노동이란 要素의 투입면에서 보면 물리적 투입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겠으나, 노동을 소유한 勞動者의 시각에서 보면 부단히 自己實現을 갈구하는 人格體이기 때문이다.

기실 西歐資本主義의 발전과정에서 보면 노동을 생산요소의 하나로만 간주하려는 使用者 측과 자아실현을 지향하려는 근로자들간의 갈등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 두 집단의 관계는 技術的 生產의 측면에서는 補完的인 관계에 있으나 生產物의 分配의 시각에서는 갈등의 관계를 맺고 있다. 生產과 分配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 개의 경제적 과정이 함축하는 社會的 意味에서 보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은 資本主義發展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의 하나이며, 그 해결을 위한 體制의 진화론적 자기변용이 없이는 결국 經濟發展 자체가 정체될 소지를 갖게 된다. 슘페터가 企業을 포함한 제반 제도에서 팽배하는 官僚主義의 타성과 사회구성원의 동기유발이 약화될 것을 토대로 體制의 지속적인 安定性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면, 특히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開途國의 발전에 대한 관전의 하나는 그러한 갈등의 사회적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길이다.

3. 經濟體制와 成長 및 分配에 관하여

미제스를 포함한 自由主義 經濟學者들에게 있어서 市場經濟制度의 規範的 正當化 작업은 크게 나누어 다음의 두 가지 논거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가 資源分配의 效率性을 제고시킨다는 기능적 측면이며, 그 다른 하나는 그것이 개체의 自由를 보장한다는 形而經濟學的 規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논거들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당시를 풍미하던 自然法思想과 功利主義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정립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개체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또는 개체간의 상호이해는 ‘조화스러운 것’이라는 것이며, ‘외부의 개입없이 주어져 있는 상태’ 내지는 ‘만족을 극대화하거나 희생이

(19) C. P. Kindleberger and B. Herrick, *Economic Development*, Third Edition, McGraw-Hill Inc., 1977, pp. 90-2.

나 고통을 극소화하려는' 裸像으로서의 인간의 성향을 토대로 모든 제도가 정립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²⁰⁾

그러나 부단한 市場의 不完全競爭이나 개체 및 이익집단간 이해관계의 갈등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보편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제스가 말하는 '自由放任的 資本主義(laissez-faire capitalism)' 단으로 복지와 자유라는 두 가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조감해 볼 때 앞에서 지적한 生產的 資產의 집중이라는 문제가 부단히 제기되어 왔으며 所有를 토대로 한 이익집단의 부작용이 노정되어 왔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사회사상가 라스키(H. Laski)의 견해는 이러하다.

資本主義體制하에서의 自我實現은 소수에게만 가능할 뿐이다. 自由放任主義 社會에서의 自由란 돈을 지니고 있거나, 자유를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다. ⁽²¹⁾

현실이란 아마도 미제스와 라스키의 극단적 견해의 사이에 있지 않을까 한다. 主流經濟思想가들이 강조하는 '自由放任的 資本主義' 와 관련하여 자유의 보장 내지는 '選擇의 自由'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을 실제로 향유할 수 있는 자유의 폭은 그에 상응하는 物質的 토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여축분이 없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勞動供給을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勞使간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契約체결의 自由' 역시 실제로는 所有의 不公正分配에 따른 協商力의 차이를 토대로 행사되는 경우가 적지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계몽주의적 자유의 개념에 대한 여러 비판들도 바로 이러한 불평등 社會契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유발하는 경제력의 집중과 생산적 자산의 집중 및 사회정책의 약화에 따른 형평의 문제를 고려할 때 이를 제어 할 수 있는 國家의 秩序政策的 機能이 중요한 것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와 반대 경우인 國家獨占資本主義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구조적 불균형이나, 독점자본의 이윤을 도모하기 위한 政經유착의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강조된다. 이와 관련하여 하이에크와 같은 自由主義者는 어떠한 社會經濟制度下에서도 국가의 기능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볼 때 1870년대 이후의 古典的 自由放任이 유발하는 사회적 갈등의 문제나 경제력 집중에 따른 문제들은 그러한 국가의 秩序政策的 機能

(20) G. Myrdal, *The Political Element in the Development of Economic Theo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55, pp. 23-55.

(21) H. Laski, "Liberty" in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IX, p. 443.

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과거 자본주의 발전을 종합하면서 2차대전 직후 프라이부르크학파의 대표자인 오이肯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로서 국가에 대한 私經濟의 존성의 심화, 극단적인 개체의 自由에 대한 위협, 거대한 기계의 한 부품으로서의 인간의 전락, 그리고 이러한 예종의 관계가 유발하는 경제적, 사회적 불안감의 고조가 그것이다.”⁽²²⁾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効率’과 ‘衡平’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국가의 기능이란 한편으로 市場의 競爭秩序를 유지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을 기하고 資本主義의 規範으로서 經濟的 自由를 보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所得의 再分配機能을 통하여 시장참여에서 배제된 계층의 기본적 욕구를 가능하게 하거나 소득의 원천분배를 수정하는 일이다. 이 때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정책의 촛점은 물론 前者에 주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효율적인 市場經濟는 그 자체가 가장 社會的’이라는 주장을 읊미 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경제적 기능에 관한 이 상의 내용은 2차세계대전 이후 西歐資本主義의 토대가 되어 온 것이었다.

이러한 經濟秩序를 창출하고 그것을 견지한다는 것은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정한 利益集團의 영향에서 탈피하여 中立的 立場을 견지할 수 있는 강력한 國家가 필요하다. 新自由主義의 經濟秩序의 이념적 단서를 제기한 학자의 하나인 뤼스토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²³⁾

“필자가 주장하는 (新自由主義的) 政策을 추진하기 위해서는……강력한 國家가 필요하다. 즉, 모든 집단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있고 경제적 이익에 개입되어 있는 경우, 그것을 다시 차단할 수 있는 국가가 있어야 한다. 바로 국가의 이러한 자기성찰과 고유한 기능의 회복은……국가가 갖는 힘과 독자성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미제스가 갈파한 自由放任的 資本主義란 오늘날의 상황에서 마치 마르크스類의 정통社會主義만큼이나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IV. 韓國的 資本主義下에서의 分配問題

우리는 이성에서 西歐資本主義가 그 발전과정에서 부단히 경제적 힘과 소득의 집중현상

(22) W. Eucken, *Grundsätze der Wirtschaft*, 5 Aufl. Tübingen, 1975.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독일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社會的 市場經濟라는 개념은 빌헬름 뢰프케와 알프레드 뮐러-아르마크(Alfred Müller-Armack)에 의하여 정립되었으며, 資本主義와 社會主義간에 ‘제 3의 길’로 고안된 것이었다. 이 제도가 지향하는 바는 法治를 토대로 한 經濟의 自由와 社會의 安定(soziale Sicherheit) 및 社會의 公正性(soziale Gerechtigkeit)간에 조화로운 험을 형성하는 데 있다.

(23) A. Rüstow, Diskussionsbeifrag, in *Schriften des Vereins für Sozialpolitik*, Bd. 187, München,

이 유발하는 社會・經濟的 도전에 직면해 왔으며 정통적인 自由放任의 資本主義가 최소한 1870년대의 불황이후에는 부단한 자기변용의 길을 밟아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는 특히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소득분배를 포함한 사회적 형평의 문제와 관련하여 ‘韓國的 資本主義’의 倫理的 規範에 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分配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이 작용하고 있겠으나 그 기본적인 원인은 資本主義의 價值에 대한 社會的 合意(social consensus)가 형성되지 않은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대전 이후 西歐社會에서 資本主義라는 經濟體制가 상대적인 安定性을 보여온 것은 무엇보다도 개체가 지향하는 ‘自由’라는 규범과 체제의 그것간에 어느 정도 일체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自由經濟’ 사상과 ‘經濟的 民主’ 사상이 체제의 기본적 규범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자본주의란 機能的 效率性에도 불구하고 그 존립기반이 취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모든 학자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產業革命’과 ‘市民革命’은 資本主義體制형성의 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前者가 봉건주의를 자본주의 질서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後者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유발하는 2階級모형의 대립성・격대성을 완화시키고 시민정신에 의한 체제의 정신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

1876년 개항 이후부터 우리의 資本主義는 革新的 官僚階層의 주도하에 추진되어 왔거니와, 구한말 改革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東道西器’라는 改革理念이 강하여 서구의 기술을 중시하면서도 그들의 사고방식은 과거의 封建的 전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²⁴⁾ 일제하 植民地・半封建상태를 거치고 난 후 60년대 이후의 공업화를 통하여 商業資本主義가 產業資本主義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韓國의 資本主義는 체제의 정신적 기반이 되는 自由經濟思想을 體化시키지 못한 채 官主導開發・開放戰略을 추진해 왔다. 다양한 금융・세제상의 특혜나 시장진입의 제한, 막대한 外資의 배분 등은 巨視的 시각에서 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개발의 촉진이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微視的 차원에서 보면 그러한 국가의 過程政策의 介入이 獨寡占企業의 利潤추구동인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었다는 의미에서 ‘國家獨占資本主義’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다.

제반 分配指標를 토대로 판단할 때 한국의 所得分配는 대만을 제외한 여타 開途國에 비하여 상대적으로公正하게 나타나 있다. 또한 공업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분배상황의 변화 면에서도 개선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上位 20퍼센트의 소득점유자가 차지하

1932, p. 68.

(24) 趙璣濬, “韓國資本主義의 定立方向”, 韓國經濟研究院, 『韓國經濟研究 創刊號』 1987. 11, pp. 4-8.

는 비중은 1965년의 41.8%에서 1976년에 45.3%로 상승하다가 1985년에는 43.7%로 그 집중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지니係數 역시 1965년에서 1976년 0.344에서 0.392으로 상승하다가 1965년에는 0.363으로 나타나, 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人的所得分配가 平準化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²⁵⁾

이와 같이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公正하게 이루어져 있는데도 근년에 들어서면서 분배문제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이 실제분배상황과 ‘體感’分配상황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그 동안 정책입안자들과 일부 경제학자들의 관심 역시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는 대단히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는 그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요약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60년대 초반 이후의官主導經濟成長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조직화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물론勞動組合이 ‘實質’賃金을 상승시키는 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는가에 대하여는 경제학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노조의 활동에 의한‘制度的’임금이市場에 카니즘에 의하여 결정되는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失業이라는 댓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차피市場임금 자체도 노동의 수급에 따라 상승하게 되는 경우라는 주장이다. 실제로는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勞組를 결성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통한 정치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기능적 소득분배 면에서 국민소득에 대한 임금소득의 비중은 1960년의 60%에서 1975년에는 68%로 상승하였다. 특히 독일의勞組는 불황기에 낮아진 분배율을 호황기에 회복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노조는 예컨대 부당노동행위나 작업조건 및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행사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使用者들간에反組合主義가 팽배해 있다. 서울大의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企業主의 44.2%가勞組에 대하여 부정적 시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사용자의 의식전환없이 전전한 노조의 육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労組의 활성화는 이론바產業民主主義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으며, 노조의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와는 무관하게 미시적·거시적 정책형성에 있어서使用者들과 대등한協商力を 부여하고, 이들의 참여의식을 통하여 소의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

(25) 趙淳, “韓國에 있어서의衡平의諸問題”, 韓國經濟學會, 『成長과衡平』, 第3次國際韓國人經濟學者學術大會(1988. 8. 2~8. 3), pp. 7~8.

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勞使間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일이다. 실제적으로 기능적 소득분배가 어떠하건 공업화과정에서 나타난 勞動三權의 유보는 근로자들에 대한 심리적 무기력·박탈감을 상승시켰을 것이다.

둘째, 分配의 문제와 관련된 다른 요인은 급속한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졸바르트에 의하면 농업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일반적인 욕구수준이 전통이나 인습에 의한 단순욕구의 층족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Bedarfsdeckungsprinzip), 자본주의가 정착되는 단계에서는 물질적 영역에서 획득·축적의 욕구 (Erwerbsprinzip)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²⁶⁾ 이러한 졸바르트의 가설적 주장을 적용할 때 급속한 공업화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욕구수준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실제적인 실질임금의 상승은 최소한 60년대와 70년대 초반기에는 그러한 욕구에 미흡한 것이었으며,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소득상승이 생산비상승보다 느리게 나타나 이들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產業의 構造的 變化와 관련된 또 다른 축면은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해체현상과 관련된다. 산업의 雇傭構造면에서 볼 때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의 63%에서 1975년에는 45.7% 그리고 1987년에는 21.9%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제조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7%, 19.1%, 28.1%로 상승하였다. 대체로 農業, 手工業이 지배적인 傳統社會에서는 인간의 社會的 關係가 人間對人間의 관계로 특징지워지는 반면, 產業資本主義體制下에서는 人間對機械의 관계가 지배적인 현상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심리적·제도적 적응에 따르는 마찰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전통사회의 해체속도가 빠를수록 그러한 부작용은 크게 나타날 것이다. 趙淳教授가 지적한 바와 같이 특히 우리나라의 所得分配가 대부분의 開途國에 있어서 보다 훨씬 平準의 인데도 다른 나라보다平等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원인은 韓國民의 平等意識에 있다기 보다는, 근로자들이 감수하고 있는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의 높은 비도, 근로자의 생산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신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직종별·학력별 임금격차 및 人間疎外의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들은 故鄉, 家族, 部落, 共同體 등 인간의 정신과 행동을 융화하는 일체의 요소로부터 疏外되어 都市의 기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생소한 集團住宅으로 모여든다.”⁽²⁷⁾ ‘人間對機械’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에서 이들이 직면하는 열악한 작업조건은 필연적으로 이들의 소외감을 상승시

(26) W. Eucken, *Die Grundlagen der Nationalökonomie*, Achte Auflage, Berlin·Heidelberg·New York: Springer Verlag, 1965, pp. 205-6.

(27) 趙淳, “韓國에 있어서의 衡平의 諸問題”, 前揭書, p. 17.

키고 기존의 제도하에서의 優理性에 대한 회의를 강화시켰을 것이다.

세째, 分配와 관련된 社會的 正義에 대한 회의론이 강화되는 현상은 무엇보다도 자본가와 고소득계층의 축적과정에서 발생하는 ‘非理’에 그 원인이 있다. 公正去來秩序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반 정책천명이나, 경제학자 및 일반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生產的 資本의 集中현상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韓國開發研究院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1985년 현재 우리나라 30대 재벌기업은 기업체 수에 있어서 1%미만(270개)을 두고 있으나 이들 기업이 전체제조업 출하액의 40.2%, 고용은 17.6%, 수출은 41.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내시장은 獨寡占型 분야가 상품 수에서는 77.7%, 출하액으로는 62.2%에 달하고 있어, 독과점형 시장의 비중이 美國・日本 등 선진국의 2~4 배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獨寡占的 市場構造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생성과정에서 볼 때 슌페더적 革新의 결과라기보다는 그 동안 成長 第1主義的 政策을 추진하면서 國家가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부여한 金融・稅制上의 특혜와 市場進入의 제한 및 대기업 편애주의적 시장보호 등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었음은 그 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된 바와 같다. 韓國의 資本主義가 國家獨占資本主義라는 개념으로 범주화하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 더우기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의 집중현상은 제조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통업과 금융부문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株式, 즉 生產的 資產이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왔으며, 이러한 資產의 ‘量的’ 집중은 經濟的 힘의 행사라는 ‘質的’ 변화를 동반함으로써 많은 경우 경제적 힘의 논리가 市場經濟의 ‘게임의 規則(rule of game)’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體制의 優理的 規範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반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미제스의 낙관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서두에서 지적한 것처럼 效率과 衡平을 조화시키는 과정은 그 동안 고안된 여러 유형의 經濟制度에도 불구하고 미결의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다. 이론적인 영역에서도 이른바 파레토최적은 어떤 사회구성원도 여타 구성원의 희생을 유발하지 않고는 자신의 厚生을 증진시킬 수 없는 상태를 설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市場의 失敗가 유발하는 문제와 함께 주어진 분배상황을 토대로 하고 있어 최적분배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分配의 公正性이나 衡平이라는 정책목표가 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익집단간에公正性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특히 우리의 경우, 성장을 위한 자본축적 및 수출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下位政策手段으로서 分配政策이 도구적 성격을 유지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

한 정책기조의 변화없이 분배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은 대체로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를 상론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分配政策의 수립과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는 分配의 公正性을 실현하는 政策目標를 여타 巨視政策目標 달성의 하위수단으로 간주했던 과거의 시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成長과 分配간에 갈등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파이’ 자체의 크기에 역점을 두어야 했던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그러한 정책철학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해도, 質的 成長 내지는 삶의 質이 부각되는 오늘날의 발전단계에서는 정책기조상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첨예화되는 사회적 갈등은 결국 국민경제의 성장능력 자체를 잠식할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分配의 公正性은 가능한 한 원천소득분배(primary income distribution)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市場이란 다분히 不完全競爭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社會政策의 機能이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대체로 서방공업국가들의 예를 보면 국가의 所得再分配政策은 그 귀착의 메카니즘이 경과한 최종의 결과를 두고 판단할 때 예상했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여타의 정책목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렇게 볼 때 재화 및 요소시장에서 競爭秩序를 마련하는 작업은 비단 자원배분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는 데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分配政策은 그 대상에 있어서 협의의 소득개념만을 토대로 해서는 안되며 資產 및 經濟的 힘의 배분 내지는 통제와 같은 포괄적 요인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세 가지는 상호연관적 보완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를 소홀히 하면서 分配의 公正性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나아가서 이른바 經濟民主主義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